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6 ~ 65

제 출 자	거창군수

1. 제안이유

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이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과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로 분리 개정·공포('16.1.19 공포, 9.1시행)됨에 따라,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과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고, 법령 개정취지에 맞게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재기재 및 확인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상위법령 위반사항 등을 정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제명, 위원회 명칭, 인용법명 변경함

○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⇒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

○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⇒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

○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⇒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

나. 위원 구성 시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재기재·확인하여 조례로 규정함에 따라 발생된 법령위반 사항을 바로 잡음(안 제2조)

○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74조에 따라 구성한다.

다. 상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로 재기재·확인하는 조항 삭제(정비)함

○ 위원회 기능(법 제25조), 구성(시행령 제74조), 위원의 해촉(시행령 제73조)

라.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74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조 ~ 제8조)

○ 위원의 임기, 위원장 및 부위원장, 위원회의 소집 및 정족수에 관한 사항, 의견청취, 간사, 실비보상,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

○「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」제25조

○「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72조 ~ 제74조

나. 예산 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　　의: 기획감사실(규제개혁담당)

라. 기타 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(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(3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: 2016. 9. 23. ~ 10. 12.

(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(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(5) 성별영향분석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74조제5항에 따라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 등) ①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은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74조에 따른다.

②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두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3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의견청취)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,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

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6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부동산 평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

제7조(실비보상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「거창군 위원회실비 변상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거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」에 따른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본다.